

2026. 4.

---

**곤충유통사업지원 곤충산업 브랜드 컨설팅  
과업지시서**

---

**파 미 준**

# 과업지시서

## I 과업 개요

- 과업명 : 곤충유통사업지원 곤충산업 브랜드 컨설팅
- 과업목적
  - 남원시 곤충산업의 브랜딩 전략 기획 및 브랜드 개발을 통해 타깃별 맞춤형 유통·마케팅 경쟁력 강화
-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용역예정액 : 금36,300,000원(금삼천육백삼십만원) \* 부가가치세 포함

## II 과업의 내용

- 본 과업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며, 세부적인 추진 방향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남원시 곤충산업 브랜딩 전략 기획
  - 국내외 곤충산업 시장 동향 및 소비자 트렌드 분석
  - 남원시 곤충 제품의 강점·약점 분석 및 차별화 전략 수립
  - 브랜드 콘셉트 설정 및 중장기 브랜드 로드맵 구축
- 통합 브랜드 네이밍 및 BI 디자인 개발
  - 곤충산업을 상징하고 대중 접근성이 높은 브랜드 네이밍 개발
  - 로고, 심볼마크, 시그니처, 전용 색상 및 서체 등 BI 패키지 개발
  - 제품 포장재(패키지), 홍보물, 명함 등 응용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
- 타깃별 맞춤형 유통·마케팅 전략 수립
  - 온·오프라인 유통 채널별(직거래, 온라인몰, 대형마트 등) 진입 전략
  - 주요 타깃층(연령별, 목적별)에 따른 홍보 콘텐츠 전략
  -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프로모션 실행 계획 제안

### Ⅲ 과업수행 지침

#### □ 일반조건

-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의해 행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 수행
- 다만,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고,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름
  -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과업내용, 과업범위, 용역기간 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
-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유지
  - 용역 관련 원고, 기초자료 등은 최종성과물이 납품됨과 동시에 소각 처분 또는 반환
- 자료의 활용과 인용은 정확하고 공인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출처 및 기준년도 등을 명확하게 표기
-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.
-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업 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하여 진행한다.

#### □ 인력 구성 요건

-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, 당초 참여하기로 한 책임자와 연구진은 본 과업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

- 브랜드 컨설팅사 기준 최고 책임자급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인력이 본 과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야 함. (해당 직위로 참여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, 포트폴리오, 수상 경력, 소속 기관의 직위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 제출)
- 다만,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동등한 능력과 경력을 갖추었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 가능

## □ 과업수행계획서 제출

-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내용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하고 요청 시에는 서면 보고해야 하며,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.
- 단순 시각디자인(BI/CI)에 국한되지 않고, 곤충 식품의 기능적·정서적 특성을 반영한 브랜드 스토리텔링 및 핵심 차별화 요소를 도출하여야 함.
- 식용곤충에 대한 소비자 심리적 거부감을 해소하고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마케팅 관점의 특화된 솔루션을 제안하여야 함.
- (착수보고) 과업 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계획, 예정공정표, 추진일정, 산출내역, 보안서약서 등과 함께 과업수행계획서를 첨부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
  - 과업 수행계획서는 계약서, 과업수행지침, 제안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
- (수시보고) 과업수행 중 특수사항 발생 시 수시보고를 진행해야 함
- (결과보고) 과업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과업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를 제출하여야 함

## □ 준수사항

- 계약 체결 후 월 1회 이상 발주처 정기 대면 보고를 원칙으로 하며, 발주처 운영 지원 및 홍보 자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.
- 브랜드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과업 완료 후 6개월간 무상 유지보수를 수행하며, 브랜드 활용 및 마케팅 전략에 관한 상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.
- 해약 및 계약기간 연장
  - 본 계약의 해약조건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도급자는 이 손해를 배상
    -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 하였을 때
    - 성실한 과업 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울 때
    -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때
  - 다음 각호의 사유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    -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
    -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
- 용역업체는 관계 법령 및 계약서 등에 의거 과업을 진행하고, 저작권법 등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여야 한다.
- 발주처는 과업진행 중 또는 완료 이후에도 당초 지침에 위배 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, 본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부분적인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의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,
- 도급자는 이를 보완하여 요청 기일내 제시하여야 하고,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추가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
-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체결 후 예정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한다.
-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개발된 제작물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, 타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, 도급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.
- 기타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 및 관계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.

#### **IV 과업 결과물 제출**

- 제출시기 : 과업완료일까지 제출
- 제출내용
  - 브랜드 컨설팅 최종 보고서(전략 기획 및 마케팅안 포함)
  -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북(BI 매뉴얼)
  - 기타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물 일체
  - 내용을 담은 파일을 별도제출